

2020년 8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044-201-2331), 사무관 김성(2335)/ 제공일: 8월 27(총 6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8.28일 시행 - 제정(2019.8.27.) 이후 1년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

《 주 요 내 용 》

◆ 추진경과

- 2019. 8. 27. 양봉산업법 제정·공포
- '19.9월~'20.5월 : 시행령 등 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20.6월~8월 : 시행령 등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 2020. 8. 28.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정 시행 등

◆ 양봉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 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위한 양봉산업 실태조사를 실시
- ② 전문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조성 등의 양봉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③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양봉농가 등록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 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시행령은 8월28일 시행, 시행규칙은 9월 중 시행 예정

□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양봉산업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하며,
- 이에 근거하여,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 양봉산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②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양봉산업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으로 규정하였다.
- ④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하도록 하였고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였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관련 참고 >

- 꿀벌의 생태계 유지·보전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발표한 보고서(양봉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가치는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으로,
 - '12년 기준 5조 8,670억원(꿀 생산액 4,039억원)
 - * 2019년 꿀 생산액 5,620억원(잠정치)
-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음(FAO 유엔 식량농업기구)

참고 1

양봉산업법령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① 법령 제정 진행 경과

- 법률 제정 공포: '19.8.27.
- 시행령·규칙 제정(안) 마련: '19.9월~'20.2월
- 시행령·규칙 제정(안) 관계기관 협의: '20.3월~5월
-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6월~7월
- 시행령 공포 시행('20.8.28.)
- * 시행규칙은 9월 공포예정

② 법률 주요 내용(20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5조), 실태조사(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꿀벌 신품종 육성 등(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제9조), 밀원식물의 조성(제10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제12조), 양봉농가의 등록의무(제13조), 영업의 승계(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제18조), 과태료(제20조) 등

③ 시행령 주요 내용(9조)

- 양봉의 부산물(제2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제6조), 권한의 위임(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등

④ 시행규칙 주요 내용(7조)

- 밀원식물의 범위(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3조),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의 추진(제4조),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제5조), 양봉농가의 변경신고(제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7조) 등

참고 2

양봉 산업 현황 자료

□ 양봉 농가수 및 봉군수

(단위 : 천호, 천군)

구분	재래종(토종벌)		개량종(서양종)		합 계	
	가구수	군수	가구수	군수	가구수	군수
'10	8.3	172	16.7	1,526	25.0	1,698
'11	4.0	101	15.5	1,431	19.5	1,532
'12	3.9	149	16.7	1,646	20.6	1,795
'13	3.5	99	16.4	1,658	19.9	1,757
'14	3.1	94	18.2	1,859	21.3	1,953
'15	3.1	110	19.5	1,853	22.6	1,963
'16	3.1	119	19.6	2,036	22.7	2,155
'17	3.7	166	21.0	2,222	24.7	2,388
'18	3.6	130	22.9	2,462	26.5	2,592
'19	3.8	131	25.2	2,613	29.0	2,744

□ 벌꿀 공급량

(단위: 천톤)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p)
생산량(a)	24.4	21.1	26.9	24.7	24.6	23.7	14.4	15.1	9.7	23.0
수입량(b)	0.5	0.6	0.8	0.7	0.8	1.0	0.9	1.0	1.1	0.8
공급량(a+b)	24.9	21.7	27.7	25.4	25.4	24.7	15.3	16.1	10.8	23.8

* 출처 : 생산량은 양봉협회, 수입량은 관세청 무역통계(천연꿀 및 인조꿀)

□ 천연꿀 수출입 동향

○ 연도별 현황

구 분	'0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수입량(톤)	275	543	653	771	689	776	900	843	935	992	683
수출량(톤)	1	4	3	28	77	53	46	29	53	33	17

○ 국가별 현황('19년)

구 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태국	베트남	중국	기타	합계
수입량(톤)	351	123	67	73	-	27	4	38	683
수출량(톤)	0.5	-	-	-	11	0.5	0.2	4.3	17

□ 양봉(벌꿀) 생산액 : 5,620억원('19.p)

○ 축산업('18. 197,307억원)의 2.8%, 농업('18. 500,513억원)의 1.1%